

주주각위

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12년 2월 13일 (월) 오전 09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54기(2011년 1월 1일 ~ 2011년 12월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※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12년 1월 27일

대 표 이 사 이 현 봉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

붙임 -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
<p>제39조(이사회 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</p>	<p>제39조(이사회 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<u>다만 상법 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</u></p>
<p>제44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4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<u>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</u>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 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.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⑤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⑥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부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제10조 제3항,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발행한도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.</p>	<p>부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 및 제44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p>